

의안번호	2109351
의 퇴 인	신영대 의원
회 답 일	2021. 7.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51) 비용추계서 요약

I. 재정수반요인

재정수반요인	추계 여부	비고
ICL 지원대상에 대학원생 추가(안 제3조제4호)	×	법률 18194호에 포함
재학기간 이자면제(안 제16조의2)	○	

II. 비용추계 결과

□ 추가재정소요: 향후 5년 간 1,482억원(연평균 296억원)

- 법률 18194호 제16조의2에 따른 재학기간 이자지원대상 범위를 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의 학자금 대출 및 4구간 이하 생활비대출로 가정한 값으로 실제 지원범위 및 대출비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 2019년 대출잔액 추정값 대비 실제값 비율을 보정계수로 적용한 결과로, 학년별 휴학률 및 휴학기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 대학원생 재학기간 이자지원액은 제외한 결과임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안 제16조의2	295	298	299	296	294	1,482	296

차 례

I. 비용추계 결과	1
II. 재정수반요인	1
III. 비용추계의 전제	2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4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4
2. 학부생(대학원생 제외)의 ICL 재학기간 이자지원비용	6
3. 추계결과	9

일러두기

-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Income Contingent Loan, 이하 'ICL')을 받은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의 재학기간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295억 4,500만원, 2026년 293억 6,600만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1,481억 9,300만원 (연평균 296억 3,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대학원생 ICL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재학기간 이자면제 (안 제16조의2)	29,545	29,816	29,856	29,610	29,366	148,193	29,639

주: 1. 법률 18194호 제16조의2에 따른 재학기간 이자지원대상 범위를 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의 학자금 대출 및 4구간 이하 생활비대출로 가정한 값으로 실제 지원범위 및 대출비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2. 2019년 대출잔액 추정값 대비 실제값 비율을 보정계수로 적용한 결과로, 학년별 휴학을 및 휴학기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3. 대학원생 재학기간 이자지원액은 제외한 결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 ICL 지원대상에 대학원생 추가(안 제3조제4호)
- ICL 지원대상을 “대학생”에서 대학원생을 추가한 “학생”으로 정의함
- 재학기간 이자면제(안 제16조의2)
- 대학생의 재학기간(휴학기간은 제외한다)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

Ⅲ.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 발의 이후 개정된 법률(법률 18194호, 2022년 1월 시행예정)에 따라 대학원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으므로 안 제3조제4호(ICL 지원대상에 대학원생 추가)에 따른 재정소요는 추계의 대상이 아님
- 안 제16조의2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시행예정법률 18194호에 따른 지원범위를 고려하여 학부생에 대한 재학기간 이자지원액을 추계
 - 안 제16조의2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경우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균이자 면제”와 같이 이자수입감소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¹⁾
 - 대학원생의 재학기간 이자지원액은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 안 제16조의2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시 시행예정법률 18194호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을 기존 재정소요로서 차감해야 하는데, 법률 18194호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의 자녀의 학자금대출, 4구간 이하인 학생의 생활비 대출인 것으로 가정
 - 최근 개정된 법률 18194호 제16조의2제2항²⁾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의 자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재학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
 - 다자녀가구 자녀 및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분위 이하인 사람에 대한 이자지원은 기존 재정소요로써 추가재정소요 추계시 차감
 - 현재 시행령이 개정되지는 않았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의 자녀의 학자금대출, 4구간 이하인 학생의 생활비 대출인 것으로 가정
 - 교육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2021. 6. 9. 제10차 사회관계

1) 현재 이자면제는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동안 면제되고 있고,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 출연(2638-300)」 사업 중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균이자 면제”로 이자면제액을 지원하고 있음
2021년 예산: 21억 1,900만원 = 2.98만명(대출자 중 군 복무자) x 4.18백만원(대출잔액) x 1.70%(대출금리)

2)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4.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장관회의)에 따른 가정

- 전체 대출잔액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의 ICL 대출잔액 및 4구간 이하 가구의 생활비 대출잔액 비율(65.8%)를 차감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대학원생의 경우 4구간 이하 학생에 대해 ICL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법률 제18194호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존 지원과 중복되고, 대학원생의 소득구간별 대출공급액 및 학부생의 기존 대출금액 등이 불분명하므로 대학원생 재학기간 동안 이자 지원액은 기존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 시행예정법률인 법률 18194호는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자금 대출한도와 상환의무 면제 연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신설, 제16조제2항)
 - 교육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2021. 6. 9.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따라 대학원생에 대해 소득구간 4구간 이하에 한하여 ICL 대출을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
 - 대학원생도 법률 18194호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재학기간 이자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대학원생 재학기간 동안 이자지원액은 대부분 기존 재정소요로서 추계의 대상이 아님
- 추계기간동안 대출금리는 1.7%로 일정한 것으로 가정

□ 학년별 ICL 등록금·생활비 대출비율, 연차별 상환률이 추계기간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학부 재학생 대출잔액 추정

- 학부생의 ICL 신규대출금액은 한국장학재단 전망치를 활용
 - 재학기간 동안의 이자지원으로 대학생의 대출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간접적인 효과는 추계시 고려하지 않음
 -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공급액 전망치는 2021년부터 4구간 이하에 대한 ICL 대출 의무화를 반영한 전망치인데, 본 추계에서는 대출잔액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의 ICL 대출잔액 및 4구간 이하 가구의 생활비 대출잔액 비율(65.8%)을 적용하므로 실제 대출잔액 중 지원대상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
- 매년 휴학 없이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거나 졸업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재학생 대출잔액 추정
 - 학부생의 경우 대출연도(n)에는 1~4학년, (n+1)년에는 기존 1~3학년, (n+2)에는 기존 1~2학년, (n+3)년에는 기존 1학년만 재학 중이고, 이에 따른 이자면제액 산출

- 재학생 대출잔액 추정값에 대해 학년별 ICL 등록금·생활비 대출비율, 연차별 상환률을 적용한 추정값 대비 2018년, 2019년 실제 대출잔액비율 평균값 55.5%을 곱하여 대출잔액 조정
 - 위의 추정방식은 휴학시기 및 기간을 반영하지 않아 추정값 대비 실제값 비율이 55.5%로 낮게 나타남
- 신규대출액의 경우 연중평잔화 지수(신규 대출분)는 12분의 7(58.33%)로 가정하여 적용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가정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개정안에 따라 대학생의 재학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경우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 군이자 면제”과 같이 대출액 및 대출금리에 따른 이자비용을 국가가 지원
 - 이자비용은 매년 신규대출잔액에 평잔화지수(7/12) 및 대출금리를 곱한 이자비용 및 기존 대출잔액에 대출금리를 곱한 이자비용을 더하여 산출
 - 대출금리는 매년 1.7%로 일정한 것으로 가정
 - 대학원생도 재학기간 이자지원 대상이나, 현재 대학원생 지원 소득구간 등이 불분명하여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부생에 대한 이자지원액만 추계
- 학부생의 ICL 신규대출금액은 한국장학재단 전망치를 활용하고, 2020년 기준 학년별 대출비율 및 2010년 ~ 2019년 대출 채권의 연차별 평균 상환율이 추계기간동안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비용추계 산식>

$$\begin{aligned} \text{연간 추가재정소요}_t &= \text{학부생 재학기간 ICL 이자지원비용}_t \\ &= \text{신규대출 금액(연말잔액기준)}_t^{(1)} \times 7/12 \times \text{대출금리}^{(2)} \\ &\quad + \sum_{\tau=t-3}^{t-1} \sum_{i=1}^{4-t-\tau} (\text{대출평잔액}_{i,t,\tau}^{(3)} \times \text{대출금리}) \end{aligned}$$

이 때, t 는 추계연도(2022~2025년), τ 는 대출년도($t-3 \leq \tau \leq t-1$), i 는 학년

$$\begin{aligned} 1) \text{신규대출금액}_t &= \text{ICL 신규대출액 현황 및 전망}_t^{(1)} \times (1 - \text{1년차상환율}^{(2)}) \times \text{보정계수}^{(3)} \\ &\quad \times (1 - \text{4구간 이하 및 다자녀 가구비율}^{(4)}) \end{aligned}$$

(1) ICL 신규대출액 현황 및 전망: 한국장학재단 전망치 활용, [표 8] 참조

(2) 2010년 ~ 2019년 대출 채권의 연차별 평균 상환율

: 1년차 15.6%, 2년차 5.1%, 3년차 3.7%, 4년차 5.2%, 5년차 6.7%

(3) 보정계수: 전체 재학생의 대출잔액 추정치 대비 실제값 비율(55.5%), [표 7] 참조

(4) 재학생 대출잔액 중 4구간 이하 및 다자녀 가구 재학생 대출잔액 비율 = 65.8%, [표 9] 참조

2) 대출금리 = 매년 1.70%(2021년 1학기 기준)이 추계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3) \text{대출평잔액}_{i,t,\tau} = \text{대출연말잔액}_{i,t-1,\tau} \times [1 - (t-\tau)\text{년차상환율}^{(1)}/2]$$

$$\text{대출연말잔액}_{i,t,\tau} = \text{대출연말잔액}_{t,\tau} \times \text{학년별}(i)\text{대출비율}^{(2)}$$

(1) 2010년 ~ 2019년 대출 채권의 연차별 평균 상환율

: 1년차 15.6%, 2년차 5.1%, 3년차 3.7%, 4년차 5.2%, 5년차 6.7%

(2) 학년별(i) 대출 비율(2020년 기준, 상수 가정)

: 1학년 24.1%, 2학년 24.0%, 3학년 23.2%, 4학년 28.7%

2. 학부생(대학원생 제외)의 ICL 재학기간 이자지원비용

□ (기존 재학생 대출잔액) 2010~2019년 대출 채권의 연차별 평균 상환율³⁾에 따라 매년 회수액이 발생하고, 대출자는 휴학 없이 매년 학년 진급 및 졸업하는 것으로 가정

- 2020년 기준 학년별 ICL 대출액 비율⁴⁾이 추계기간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18년, 2019년 재학생 대출잔액 추정값 대비 실제값 비율은 55.5%인데 이는 추정값 계산시 휴학시기 및 휴학기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
 - － 휴학생은 재학기간 이자지원에서 제외되므로 휴학기간을 포함할 경우 추정값에 비해 대출잔액이 감소하게 됨

[표 7] 재학생 대출잔액 추정값 및 실제값 비교

(단위; 백만원)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ICL 대출액(A)	1,370,549	1,198,329	904,609	837,865	877,694
2015년 대출자 잔액	1,156,743	782,695	508,481	241,521	—
2016년 대출자 잔액	—	1,011,390	684,344	444,586	211,172
2017년 대출자 잔액	—	—	763,490	516,606	335,615
2018년 대출자 잔액	—	—	—	700,945	474,285
2019년 대출자 잔액	—	—	—	—	740,774
재학생 대출잔액 추정값(B)	—	—	—	1,903,658	1,761,846
재학생 대출잔액 실제값(C)	—	—	—	1,033,410	1,000,493
실제 대출잔액 비율(D=C/B)	—	—	—	54.3	56.8

주: 1. 굵은 글씨는 실제 값이며 그 외에는 추정값

2. 대출자 잔액: 대출연도의 경우 1년차 회수율(15.6%)를 제외하여 산출하고, 이후 전년대비 연차별 회수율을 곱하고, 졸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년비율을 제외하여 산출, 연말기준값

3. B: 재학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대출자 잔액의 합

4. C: 재학 중인 학생의 실제 ICL 대출 잔액의 합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2010년 ~ 2019년 대출 채권의 연차별 평균 상환율 : 1년차 15.6%, 2년차 5.1%, 3년차 3.7%, 4년차 5.2%, 5년차 6.7%

4) '20년 학년별 ICL 공급액 비율: 1학년 24.1%, 2학년 24.0%, 3학년 23.2%, 4학년 28.7%

□ (재학생 대출잔액 추계) 앞서 추계한 방식과 동일하게 전체 재학생 대출잔액을 추정하고 이에 대해 보정계수(55.5%)를 곱하여 재학생 대출잔액을 추계

- ICL 신규대출액은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의 ICL 공급확대 전망⁵⁾을 적용

[표 8] 학부생 중 재학생 대출잔액 전망:2022~2026년

(단위; 백만원)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ICL 대출액	877,694	821,452	1,111,676	1,102,424	1,093,279	1,084,240	1,075,306	1,066,476
2019년 대출자 잔액	411,426	278,386	180,854	85,903	-	-	-	-
2020년 대출자 잔액	-	359,916	243,533	158,212	75,148	-	-	-
2021년 대출자 잔액	-	-	521,107	352,600	229,068	108,804	-	-
2022년 대출자 잔액	-	-	-	516,770	349,665	227,161	107,898	-
2023년 대출자 잔액	-	-	-	-	512,483	346,765	225,277	107,003
2024년 대출자 잔액	-	-	-	-	-	508,246	343,898	223,414
2025년 대출자 잔액	-	-	-	-	-	-	504,058	341,064
2026년 대출자 잔액	-	-	-	-	-	-	-	499,919
재학생 대출잔액 보정값	-	-	-	1,113,485	1,166,364	1,190,976	1,181,131	1,171,401
신규잔액	-	-	-	516,770	512,483	508,246	504,058	499,919
기존잔액	-	-	-	596,715	653,882	682,730	677,073	671,482

주: 대출자 잔액은 보정계수를 적용한 값으로 연말잔액 기준 작성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지원대상 재학생 대출잔액) 시행예정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인 4구간 이하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의 대출잔액을 제외하여 개정안에 따른 신규 지원대상의 대출잔액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이자지원액을 산출

- 법률 18194호에 따라 4구간 이하 학생의 생활비 대출 및 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 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에 대해 재학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2018, 2019년 재학생 대출잔액 중 4구간 이하 및 다자녀가구 재학생의 대출잔액 비율은 52.1%이므로 재학생 대출잔액 중 해당 비율을 제외하여 추계

5)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

[표 9] 재학생 대출잔액 중 4구간 이하 및 다자녀가구 재학생 대출잔액 비율: 2018~2019년
(단위: 백만원, %)

구분	전체 재학생 대출잔액 (A)	다자녀가구 겸 5구간 이상 재학생 대출잔액(a) ¹⁾	4구간 이하 재학생 대출잔액 ²⁾		기초·차상위 재학생 대출잔액		3~4구간 다자녀가구 재학생 등록금 대출잔액(f) ³⁾	시행예정 법률 既지원 재학생 대출잔액(B) ⁴⁾	既 지원율 (B/A)
			등록금(b)	생활비(c)	등록금(d)	생활비(e)			
2018	1,033,410	88,795	269,873	406,946	24,148	74,994	16,155	536,044	51.9
2019	1,000,493	89,147	228,660	401,738	19,114	72,305	13,014	523,013	52.3

주: 1) 다자녀가구의 소득구간 분포 중 대출 원장 상 소득구간 정보가 없는 경우 그 외 대출잔액 중 5구간 이하 대출잔액 비율에 비례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합산
 2) 기초·차상위 대출잔액 포함한 값임
 3)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로 소득구간 2구간 이하에 해당하므로, 4구간 이하 다자녀가구 재학생 중 기초·차상 위계층이 아닌 재학생의 등록금 대출잔액 합산 필요
 4) B=a+c+d+f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

- 보정계수를 곱하여 추계기간동안 신규대출잔액 및 기존대출잔액을 산출하고 이 중 기존 지원비율(52.1%)을 제외하여 이자지원액을 산출
- 신규대출잔액에 대해서는 평잔화계수 및 이자율을 곱하고 그 외 잔액에 대하여는 이자율만 곱하여 이자지원액을 산출

[표 10] 재학생 중 시행예정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을 제외한 대출잔액 전망:2022~2026년
(단위: 백만원)

연 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신규대출잔액 보정값(A)		516,770	512,483	508,246	504,058	499,919
	기존지원제외(α)	247,688	245,633	243,602	241,595	239,611
	이자지원액($\alpha \times (7/12) \times 1.70\%$)	24,562	24,359	24,157	23,958	23,761
누적대출잔액 보정값(B)		611,585	669,739	699,396	693,601	687,873
	기존지원제외(β)	293,133	321,006	335,220	332,443	329,698
	이자지원액($\beta \times 1.70\%$)	4,983	5,457	5,699	5,652	5,605
이자지원액 합 계		29,545	29,816	29,856	29,610	29,366

주) A: 연말잔액, B: 평잔액 기준 작성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상의 추계과정을 통해 신규대출잔액 및 누적대출잔액에 대한 이자지원액은 다음과 같음

[표 11] 개정안에 따른 학부생 이자지원액¹⁾ 추계:2022~2026년

(단위: 백만원)

연 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재학생(기존지원대상 제외) 신규대출잔액 (A) ²⁾	247,688	245,633	243,602	241,595	239,611
재학생(기존지원대상 제외) 누적대출잔액 (B)	293,133	321,006	335,220	332,443	329,698
신규대출액의 이자지원액(C) ¹⁾	24,562	24,359	24,157	23,958	23,761
기존대출액의 이자지원액(D) ²⁾	4,983	5,457	5,699	5,652	5,605
이자지원액 (E=C+D)	29,545	29,816	29,856	29,610	29,366

주: 1) 추계기간동안 대출이자 1.7% 유지

2) 대출자 잔액: 대출연도의 경우 1년차 회수율(15.6%)를 제외하여 산출하고, 이후 전년대비 연차별 회수율을 곱하고, 졸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년비율을 제외하여 산출(A: 연말잔액, B: 평잔액)

3) C: 신규대출액 × 1.7% × (7/12)

4) D: 1~3년전 대출평잔액 × 1.7%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의 재학기간 ICL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295억 4,500만원, 2026년 293억 6,600만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1,481억 9,300만원(연평균 296억 3,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2] 대학생 재학기간 ICL 이자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29,545	29,816	29,856	29,610	29,366	148,193	29,639

주: 1. 법률 18194호 제16조의2에 따른 재학기간 이자지원대상 범위를 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의 학자금 대출 및 4구간 이하 생활비대출로 가정한 값으로 실제 지원범위 및 대출비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2. 2019년 대출잔액 추정값 대비 실제값 비율을 보정계수로 적용한 결과로, 학년별 휴학을 및 휴학기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3. 대학원생 재학기간 이자지원액은 제외한 결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과
과장	이진우
추계세제분석관	박나경
연락처	02-6788-4627
	nkpark@assembly.go.kr
